

<p>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로 한다.</p> <p>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8호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p> <p>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5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p> <p>제22조를 삭제한다.</p> <p>제27조제2항중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한다.</p> <p>제8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p> <p>제49조제1항중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을 “납세의무자는 경주종료일”로 하고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마사회에”를 “납세의무자에게”로 한다.</p> <p>제50조본문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경마”를 각각 “경주”로 하며,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p>	<p>2.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권세액</p> <p>3.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경주투표 적중수</p> <p>4.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p> <p>제51조본문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p> <p>2.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p> <p>3.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 그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p> <p>제52조증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	--

배기량	씨씨당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 이하	10원		110원
2,000cc 이하	10원		140원
3,000cc 이하	12원		165원
3,000cc 초과	15원		200원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 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엘лем복지타운, 부녀복지관) 부지매입 및 한
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신축과 서울시립대의 외

국객원교수 숙소인 APT 매입등 재산취득,
용도폐지된 토지 및 건물의 재산매각,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투자 기관, 공공 도서관에
무상사용 협약을 내용으로 하는 '94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통의한다.

○'94시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

- | | | | | |
|--------|-----|----|-------|------------------------|
| • 취 득 | 5건 | 토지 | 11필지 | 9,373.05m ² |
| | | 건물 | 9동 | 2,307.27m ² |
| • 처 분 | 25건 | 토지 | 25필지 | 7,654.4m ² |
| | | 건물 | 4동 | 638.92m ² |
| • 무상사용 | 5건 | 토지 | 149필지 | 762,233m ² |
| | | 건물 | 3동 | 9,215.97m ² |

(다음 페이지에 계속)